

이정은. 2020. “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의 인권친화적 태도” 『인권연구』 3(1): 1-31.
Lee, Jeong-Eun. 2020. “Human Rights-Friendly Attitudes of Prosecutors in Trial Proceeding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3(1): 1-31.

[일반논문]

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의 인권친화적 태도* : 법정 모니터링을 통한 인상분석을 중심으로

이 정 은**

한글초록

이 글은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공판검사의 언행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공판검사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경남, 전남, 제주의 법정을 방문하여 공판검사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고프만의 인상관리 이론을 적용하여 질적연구방법의 관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3자에 의한 언어와 비언어적 행위의 해석은 공판검사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공판검사의 태도는 인권 친화적인 태도와 공판수행의 성실성, 신속성, 친절함의公所 수행역량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공판검사는 소송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도된 노력이 필요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회적 관계와 조건 속에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판중심주의, 공판검사, 인상분석, 인권침해, 모니터링

* 이 글은 2018년도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공판과정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본 공판검사의 법정태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윤해성·강태경·이정은)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연구보조원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도와준 이지현(전남대), 신정민(서울대), 양연수(창원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논문에 대해 생산적인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연구방법
- III. 소송관계인에 대한 공판검사의 인권친화적 태도
- IV. 공판검사의 공판수행 역량
- V. 지역별, 재판형식별 공판검사의 태도
- VI. 맺으며

I. 들어가며

공판중심주의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증거조사가 공판절차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판절차에서 인권보호의 핵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으로 이는 적법절차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이주원, 2020: 166). 법정에서 ‘시민의 감시’를 강화한 이 절차는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두 진술을 위주로 하는 구두주의, 증인의 직접 진술을 원칙으로 하는 직접주의, 법원이 공판정에서 심증을 형성하여 판결을 하는 당일선고, 판사실 심증형성금지 등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내용으로 한다(이완규, 2007: 96).

한국의 공판중심주의는 1961년과 198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정의 구두진술에 의한 심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2007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2020.1.13 검경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제한받게 되었다(이주원, 2020: 167). 이 제도는 형사절차에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은 물론, 객관적인 진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정응석, 2012: 246).

그러나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에 따른 공방과정에서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판검사들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공판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의 진술증거를 통해 진실발견이 추구되어야 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충실한 변호권 보장이 이뤄져야 하지만, 재판과정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통념과 상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법정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¹⁾ 법정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증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되풀이하여 발언하게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공판검사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는 공판결과에 대한 불신을 넘어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이 일반 시민 1,100명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법원과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5개 형사사법기관 중 검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의기 외, 2017: 753).

공판정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와 증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으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구현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공방의 장이다. 이때, 공판검사의 언행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는지, 전문적인 능력과 검사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 글은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비언어적인 태도를 모니터링하여 재판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

1) Ohmynews, 수사관의 질문 「콘돔 낄 사이에 왜 안 도망갔나?」, 2018.11.13일자 인터넷 신문, 경향신문, 「군 재판부, 성폭행 피해 여군에 “그때 상황 그대로 해보세요”」, 2018.11.22일자 인터넷 신문 참조.

해 문제를 점검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형사절차에서 인권보호 문제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²⁾ 그러나 재판과정, 특히 법정에서의 인권보호 문제나 모니터링을 통한 공판검사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법인류학적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한 이재협³⁾의 연구가 대표적이며³⁾ 검사들이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검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검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정도이다.⁴⁾

『공판검사의 법정언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조사는 공소수행 현장의 방청 모니터링을 통해 각 프로세스에서 해당 검사의 장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진술과 증인신문, 구형 시에는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어떤 형식으로 개요를 설명하며 전문용어를 얼마나 쉽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쉬운 질문으로 시작하기”, “구체적인 질문 사용하기”, “유연성 있게 변경하기” 등 일종의 지침과 예시를 들고 있다. 또한, 개별 재판 사례를 ①재판 프로세스 ②재판진행과 커뮤니케이션 ③비언어와 준언어로 나누어 장점과 보완점을 제시하고 컨설팅 이후 개선된 사항과 보완할 사항을 다시 제안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발간한 『검사평가 사례집』은 “국민의 기본권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하는 사례를 벗어나기 위해” 2015년 10월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초로 시행한 검사평가제에 근거하

2) 이에 대해서는 조국(2002), 서보학(2003), 김용세(2008), 이호중(2009), 김유근 외(2019), 이주원(2020) 참조.

3) 이재협(2011), 『법정언어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문화적·상호교섭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52-2 참조.

4) 2015년에 검찰의 의뢰로 (주)메가넥스트에서 『공판검사의 법정언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를 조사한 것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검사를 평가한 『검사평가 사례집』이 있다.

고 있다. 이 사례집은 변호사의 시각에서 검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판검사에 대한 개별컨설팅 결과는 검사 개인의 성향과 문제점으로 축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사건명과 지검, 검사의 성별과 연령까지 공개되어 검사 내부에서 누구에 대한 컨설팅인지 알 수 있다. 검사평가의 경우, 변호사가 검사에 대해 제출한 평가표를 근거로 사례집을 작성한 것이라 개인별로 평가의 차이가 커 보인다. 검사평가는 2015년에 601명의 변호사가 1675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한 반면, 2016년도에는 변호사 18850명의 11.55%에 해당하는 2178명이 4984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태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참여자가 한 해 만에 3.6배가 늘었다(대한변호사협회, 2016: 3-4).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시한 사례를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눠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검토하였다.⁵⁾ 이 조사는 수사검사에 비해 공판검사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개별 변호사의 평가를 그대로 나열해 놓은 단점이 있지만,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행동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기존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법정’이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공판검사의 ‘태도’에 대한 ‘인상’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형사재판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적 정의(正義) 실현’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과 판결과정을 추적·조사하는 과정도 병행해야겠지만, 조사과정의 시간적·물리적 한계로 인

5) 검사평가제의 평가표는 크게 6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에 A~E까지 5단계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은 ①검사의 윤리성 및 청렴성 ②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여부 ③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④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⑤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⑥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 등이다(대한변호사협회, 2017: 1-2).

해 모니터링이 가능했던 ‘법정’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한정하였다.⁶⁾ 따라서 조사는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판검사의 ‘태도’에 집중하였고 그런 태도가 보여주는 ‘인상’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공판검사의 ‘태도’는 법사회학이나 법인류학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들의 공유된 행동기준, 인식방식, 행위의 규칙 등을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다.⁷⁾ 그러므로 ‘인권친화적 태도’란 단순히 얼마나 친절한 말투와 신사적이며 세련된 태도를 취하는가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을 얼마나 균형있게 담보하고자 하는가와 관련된 ‘인상’이다. 따라서 인권친화적 태도는 공판검사가 재판에 어느 정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재판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 증인과 어떻게 소통하며 공소수행을 설득력 있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가의 공소수행 역량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다양한 재판 참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공판검사의 공소 수행에서 ‘역량’이란 법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이 될 수 있는가의 물음에 답하는 것과 같다. 아마티아 센(Amatrya Kumar Sen)은 “사람의 ‘역량’은 성취할 수 있는 기능의 선택 가능한 조합”을 가리키므로 “역량은 일종의 자유, 즉 선택 가능한 기능의 조합을 달성하는 자유”라고 하였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의 고유 역량을 만들어내는 자유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다(Nussbaum, 2015: 35-36). 따라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윤리적이면서도 가치 평가적이다.

6) 관련 법정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기에는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인 제약이 많아서 불가능하였다. 짧은 기간에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회학 전공자로서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7) 이에 대해서는 법인류학적 관점에서 법정언어를 분석한 이재협(2011) 참조

II. 연구방법

1. 관찰조사, 인상분석

조사방법은 질적조사 가운데 관찰조사, 모니터링 방법을 취하였다.⁸⁾ 질적 연구는 탐구대상의 본질적인 측면과 그 작동방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생생한 구성은 물론, 참여 연구자의 이해와 경험 및 상상력 그리고 사회제도와 사회관계가 작동하는 방법과 의미 등 현실세계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차원을 탐구할 수 있다(Mason, 2010: 17). 구성주의가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현존하는 세계의 주관성에 천착한다면, 참여연구, 관찰조사는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실재에 다가가고자 한다.⁹⁾

이 연구가 취하는 ‘인상’분석은 공동체 성원들의 관계와 의미의 협상, 그리고 그에 따라 새로운 실재를 구성해가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고프만(Erving Goffman)의 상호작용적 인지이론에 근거한다. 일상생활을 연극무대에 비유한 고프만은 사회적 드라마에 임하는 행위자들의 연기를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로 표현하며 이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종하려는 시도라고 하였다. 공연장을 구성하는 ‘사회’라는 무대 위의 행위자는 무대의 ‘전면(front)’과 ‘후면(back)’에서 각기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지만, 이 둘은 일상생활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고 혼재할 수밖에 없다(Goffman, 1959: 22-30; 이광기, 2011: 110-113).

8)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John W. Creswell(2006)와 최종렬·김성경·김귀옥·김은정 엮음, 한국문화사회학회 기획(2018) 참조

9) 참여연구에서 말하는 ‘실재’란 상호 참여적인 인식과 행위를 바탕으로 만남과 대화, 공유되는 예술과 언어, 가치, 규범, 사상 등을 통해 타자가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동시에 참여하고 있음을 뜻한다(Mason 2010: 26-28).

법정에서 공판검사는 아무리 권위 있는 복장을 하고 세련된 언어와 신뢰감 가는 제스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무대의 ‘전면’에 등장 하더라도 ‘후면’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출 수 없다. 특히, 법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주체에 대한 태도는 의식적 노력만으로 통제할 수 없고 ‘전면’과 ‘후면’의 혼재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판검사에 대한 ‘인상’분석을 위해 고프만의 인상관리이론에 근거하여 법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에 대한 인상분석의 해석적 관점을 취하였다. 평가도구는 주관적 관점의 인상분석이 강하며 해석의 과정에는 자료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感), 통찰, 직관 등에 기반하였다. 사회과학적 개념이나 사고, 또는 이것과 대조되는 개인적 관점의 조합에 근거한 해석적 시각도 포함하였다(Lincoln and Guba, 1985).

둘째, 이 연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사례를 관찰하면서 공판검사의 언어와 행동이 어떤 형태로 발현되고 그 형식에 따라 공소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신뢰를 높이거나 떨어뜨리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공판검사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나 언어의 발화 방식을 조사하여 공판검사가 가져야 할 재판정에서의 덕목과 역량으로 일반화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법정을 방문하여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공판검사의 태도에 대한 인상을 기록하고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공판과정의 모니터링은 상황묘사의 객관성과 해석적 관찰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한시성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글은 공판검사의 재판과정에 대한 ‘인상’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언행을 분석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관찰조사는 면접에서 구두 응답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화나 사용하는 언어, 수사(修辭), 행위양식, 문서 작성의 상황까지 다양한 차원의 관심에서 출발한다(Mason, 2010: 128).

이 글은 법정이라는 특정한 공간과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행위, 검사가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증거 설명을 위해 작성한 문서(PPT) 등 폭넓은 자료가 분석대상이다. 연구자는 주체와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기록함으로써 공판검사에 대한 인상자료를 생산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적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연구자가 숨어서 또는 드러내놓고 하는 관찰의 윤리성 문제, 관찰자의 역할을 어느 범위까지 한정할 것인가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다(Coffey, 1999). 법정에서 관찰자의 존재 유무를 공판검사가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조사 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사는 제한된 장소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열린 기록으로써 자료를 생산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2. 조사설계 및 내용

1) 관찰조사의 설계

조사대상은 법정에 참여하는 공판검사이다.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검사상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방법은 개인단위로 진행했지만, 조사결과는 개인단위로 평가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조사지역은 전국의 각 지점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가장 많은 재판이 열리는 서울·경기 지역을 선정하였다. 서울의 재판 일정을 먼저 파악하였고 수원, 인천 등 경기지역의 지점들도 조사지역에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진의 접근성이 높은

경남과 전남지역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전국 지검 중 유일한 섬 지역인 제주도의 법원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조사지역은 서울·경기, 경남, 전남, 제주이다.¹⁰⁾

조사내용은 공판검사의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이다.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기록하되, 비언어적인 행위인 몸짓, 시선, 표정까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¹¹⁾ 검사가 재판 진행을 위해 제시하는 문서자료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였는지,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공판검사의 태도는 재판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재판은 특별히 주목받는 사건이 아닐 경우, 증인, 피해자 등을 제외하고 참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재판과정과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배심원들이 있고 연수를 받는 예비검사와 재판을 참관하는 대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법정에 있다. 이에 따른 공판검사의 태도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공판검사의 태도에 대한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설계하였다. 첫째, 소송관계인인 변호사, 피고인, 증인, 배심원에 대한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태도 조사이다. 여기에서 ‘인권친화적 태도’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판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공판검사가 이들을 공격적이거나 고압적으로 대하는가의 여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가의 여부, 발언을 방해하지 않고 경청하는가의 여부, 소송관계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신청 등에 협조하였는가를

10) 이 연구는 필자를 중심으로 보조연구원 3명이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11) 법정에서는 녹음이 불가하고 노트북의 사용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공판검사의 언행은 수작업으로 기록하였다.

조사하였다.

둘째는 공판검사의 공판 수행 능력인 역량 평가이다. 이것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판검사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관한 것이다. 공판의 공정성, 성실성, 신속성으로 정리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사가 공판 수행 과정에서 증거에 따라 공판을 수행하는지, 정시에 출정하여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경청하는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신문과정에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불필요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지 등이다.

반개방형 질문지에는 기타 기록사항으로 공판검사의 태도뿐만 아니라, 법정의 분위기, 변호사나 재판장의 태도와 역할, 증인과 배심원에 대한 법정 주체들의 태도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질적 조사방법의 관찰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설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질적 연구, 관찰조사의 설계

연구집단	구분	기본 조사 항목
전국 지점 법정 참여 공판 검사 모니터링	조사 대상	o 각 지점의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판검사의 언행 o 공판검사가 사용하는 언어, 비언어적 행위(몸짓, 시선, 표정 등) o 공판검사가 제시하는 문서자료 포함
	지역	o 서울·경기, 경남, 전남, 제주
	유형	o 재판유형별: 일반재판, 국민참여재판
	조사 방법	o 개인 단위조사 o 반개방형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지에 관찰자의 의견 기술
	조사 내용	1. 소송관계인에 대한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태도 o 변호인, 피고인, 증인, 배심원에 대한 태도 o 발언의 방해 여부/ 고압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 2. 공판수행 역량 평가 o 공정한 진행: 임의로 개입하는가/ 증거에 입각한 공판수행 여부 o 성실한 진행: 정시 출정, 경청/ 사건에 대한 이해 여부 o 신속한 진행: 신문과정의 용어/ 불필요한 질문의 반복 o 기타사항: 소송관계인 태도/ 법정분위기/ 재판장의 태도

2) 조사대상 및 점검기록표

조사 시기는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하였다. 먼저, 조사 지역인 서울·경기, 경남, 전남, 제주지역에 각각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시기가 불규칙하여 매번 지점의 홈페이지를 체크하거나 직접 문의하였지만,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가장 많이 열리는 서울·경기에 한정하였고 제주를 포함하였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전체 7건의 재판을 참관하였는데 3건이 일반재판이고 4건이 국민 참여 재판이다. 최종적으로 조사한 지역과 재판형식, 사건명은 <표 2>와 같다.

<표 2> 공판검사 모니터링 대상 개요

연번	지역	재판형식	공판장소	사건번호	죄명	비고
1	서울 경기	일반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	사기	증인신문
2		속행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	사기	증인신문
3		속행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한법률위반(도주치상)	증인신문
4		국민참여	서울북부지법	2018고합***	업무상해 등	증인신문
5		국민참여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	특수상해	증인신문
6		국민참여	서울서부지법	2018고합***	아청(강제추행) 및 폭행	증인신문
7		국민참여	서울남부지법	2018고합***	특수재물손괴 등	증인신문
8	전남 제주	일반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증인신문
9		국민참여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	업무방해	증인신문
10	경남	일반	창원지방법원	2018노****	무고	
11		일반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	특정경제범죄	증인신문

공판검사의 태도 조사는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직접 방문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준비된 반개방형 질문지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소송관계인들이 사전에 조사원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법정에서는 녹음을 하거나 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조사내용을 모두 수기로 작성하였다. 공판검사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점검기록표는 <표 3>과 같다.

<표 3> 공판검사 법정태도 점검 기록표¹²⁾

점검영역	점검항목		
피고인	피고인을 공격적이거나 고압적으로 대하였다.	○	×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	×
	피고인의 발언을 방해하지 않고 경청하였다.	○	×
	피고인 측의 신문 과정에 임의로 개입하여 신문을 방해하였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증인 신청 등에도 협조하였다.	○	×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을 구형하였다.	○	×
변호인	변호인을 공격적이거나 고압적으로 대하였다.	○	×
	변호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	×
	변호인의 발언을 방해하지 않고 경청하였다.	○	×
증인	증인을 공격적이거나 고압적으로 대하였다.	○	×
	증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	×
	증인의 발언을 방해하지 않고 경청하였다.	○	×
	검사 측에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기보다는 증인이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신문을 진행하였다.	○	×
공판수행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판 준비를 충실하게 하였다.	○	×
	정시 출정, 경청 등 재판정 내에서 성실한 태도로 공판에 임하였다.	○	×
	공판 과정에서 알기 쉬운 표현이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	×

12) 이 기록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강태경 부연구위원이 작성, 연구자와 논의 후 확정하였다.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	×
	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이나 반복적인 질문을 하였다.	○	×
	자료 제출, 증거 신청 등 공판 진행에 필요한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	×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예의 바르게 대하였다.	○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오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	×

먼저, 피고인, 변호인, 증인, 배심원들에 대한 검사의 인권친화적 태도는 공격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의 유무, 무시하는 태도의 유무, 발언의 방해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공판검사의 공판수행역량은 인권친화적 태도와 일정정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인 공판 수행의 공정성, 성실성, 신속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점검기록표 작성은 인권사회학을 전공하고 인권감수성이 높은 조사자들로 구성하였으며 모니터링 후에 조사자의 의견을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에 ○, × 표시를 한 뒤, 무시하는 태도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언어나 태도를 작성하였다. 기타 특이사항에는 소송관계인의 태도, 법정분위기, 판사의 태도 등도 기록하였다.

Ⅲ. 소송관계인에 대한 공판검사의 인권친화적 태도

1. 피고인에 대한 태도

먼저,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말이 무례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예를 들어,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거 아니지~응?” “응, 응” 등 반말로 대답하는 경우는 친근함이나 편안한 분위기를 주기보다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언이 길어질 때, 발언을 끊고 다시 질문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짜증을 내는 모습은 피고를 위축시킬 수 있었다.

비언어적 행위로 짜증스런 표정, 피고의 발언 시에 경청하지 않는 태도 등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답변을 하였음에도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이다. 피고인이 “나는 피해자를 때린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직후, 다시 “피해자가 협박해서 때렸나요?”라며 반복해서 질문을 한 경우가 있었다. 이 때는 공판검사가 자신이 준비한 질문을 순서대로 읽어갈 뿐, 피고인의 대답에 주의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피고에게 질문할 때, 검사가 더욱 긴장하여 숙제하듯이 빠르게 질의-응답을 하기보다는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였다.

<표 4>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태도

조사대상	긍정적 인상	부정적 인상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라며 시작 • 피고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건을 구성하여 차례대로 질문 •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재설명 • “오해하지 말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질문하는 건데요...”라며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에게 반말 사용 • “그런 거 아니지~응?” 등 사투리가 반말로 오해의 소지 있음 • 피고인의 답변을 듣지 않고 같은 질문 반복
비언어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발언할 때 메모, 시선을 응시하고 경청 • 피고인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언을 중간에 끊는 행위 • 짜증스런 표정 • 피고인의 대답을 끝까지 듣지 않는 행위

2. 증인에 대한 태도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의 발언에 주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보다는 빨리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 증인이 답변한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다. 증인의 대답이 질문에서 벗어나자 “자, 검사가 묻는 말에...”, “자, ~에 대해서 검사가 묻지 않았잖아요, 그죠?” 등 자신을 ‘검사’라고 칭하는 발언이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증인이 써 온 내용을 보고 말할 경우, ‘발언의 진실성을 담기 위해서는 써온 대로 읽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제지하여 증인이 위축될 수 있었다. 간혹, 증인이 ‘증인’으로의 역할에 부담을 가지고 극도의 긴장된 상태에서 발언할 때 그의 “말”에만 집중할 뿐, 증인을 좀 더 안정시키거나 배려하지 못했다. 같은 사건의 신문을 맡은 다른 검사는 “이전 경찰 조사에서는 000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며 증인의 기억을 도와주어서 상대를 배려한다는 인상을 주었다.¹³⁾

증인은 보통 법정 분위기에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는 증인에 대한 질문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언어나 비언어적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예를 들어, 검사가 증인신문 후,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가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른 검사의 경우는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등의 용어로 마무리하여 증인의 역할을 좀 더 존중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증인의 말이 길어질 경우, 좀 더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증인이 검사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전혀 다른 대답을 할 경우, 시간상의 제약 때문이겠지만 답변을 듣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검사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공판정은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로 일부 법정에서 변호사

13) 국민참여재판의 사례로 공판검사 두 명이 진행한 경우를 말한다.

측 증인에게 “알겠나~?”며 따져 묻는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감정적이며 고압적인 태도로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판검사는 친절하면서도 부드럽게 증인을 심문하였다. 증인이 검사 측이나 변호인 측이나에 따라 검사의 태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일부는 변호인 측 증인에게 좀 더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증인이 정확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신문을 진행하였고 증인이 언급한 부분에 특정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증인이 검사의 질문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더라도 발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질문하기도 하였다. 증인이 발언하는 동안 계속 눈을 맞추며 발언에 집중하였고 발언 내용에 대해 “네, 네”라며 잘 듣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증인이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요?”라며 확인해주었다. 간혹 증인이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할 때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증인이 질문 내용을 못 알아들을 때는 검사가 “죄송하다”며 자신의 설명방식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증인이 고령이거나 어릴 경우,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등의 친절한 말투로 매우 천천히 질문하여 증인을 배려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 몇 가지 좀 여쭙볼게요”, “증인 ~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해요” 등 증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용어를 설명하는 친절함을 보였다. 글을 못 읽는 증인을 위해서는 조서 내용을 옆에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증인이 질문에 빨리 답변하지 못할 때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증인의 발언이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정중히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요청하였다.

<표 5> 증인에 대한 검사의 태도

조사대상	긍정적 인상	부정적 인상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요?”라며 다시 확인, “죄송하다”며 다시 설명 • “증인, ~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해요”라며 용어를 설명 • 개인적인 부분을 언급할 때는 “실례가 안되시면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라며 양해를 구함 • 증인의 발언이 잘 들리지 않을 때는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 검사가 묻는 말에...” “자, ~에 대해서 검사가 묻지 않았잖아요, 그죠?” 등의 발언은 권위적으로 들림 • “피고인이 ~한 것인데 먼저 ~한 거 아니에요?” 등으로 답변을 유도 • 증인 신문 후 변호인에게 “이제는 아셨나요?”라는 따져 묻는 말투
비언어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 • 증인이 고령이거나 어릴 경우, 쉽고 친절한 말투 사용 • 증인이 질문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 가까이에서 말하거나 배려함 • 부드러운 말투 사용 • 증인이 발언할 때는 고개를 끄덕여서 잘 듣고 있다는 인상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속 발언만을 요구함 • 증인의 말을 끊고 본인이 원하는 질문의 답을 재차 요구함 • 검사의 질문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 없이 자리로 돌아감
문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못 읽는 증인을 위해서 조서 내용을 옆에서 보여주며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음

3. 변호인에 대한 태도

이번 조사에서 변호인과 검사와의 소통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변호인과는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변호인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였다. 변호인이 언급한 부분을 찾아서 추가 질문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구하여 반박하였다.

변호인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발언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할 때도 고압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변호인이 PPT로 발표할 때 경청하였고 “검사가 진술을 축소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할만한 내용이 있을 때에도 발언이 다 끝난 후 기다렸다가 해명하였다. 이는 변호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표 6> 변호인에 대한 검사의 태도

조사대상	긍정적 인상	부정적 인상
언어	•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호인의 발언이 끝난 후 설명	•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음
비언어적 행위	•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 • 변호인이 발언할 경우 메모 • 필요할 경우,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 요구	•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음
문서자료	• 변호인이 언급한 내용을 찾아서 추가 증거 제시	•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음

IV. 공판검사의 공판수행 역량

1. 성실한 공판 수행

대부분의 공판검사들은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증거를 꼼꼼히 챙겨서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법정에서 출정하여 준비하였고 변호인과 증인의 대답을 성실하게 들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배심원에게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보며 사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공판준비도 성실하게 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검사는 자료화면과 PPT 자료를 알기 쉽게 준비하여 쟁점이 되는 내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폈다. 공판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특정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였다. 변호인 측의 신문 이후, 궁금한 사항이나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다시 논점을 정리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휴정 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는 모습으로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누가 발언을 하든지 발언자를 응시하는 모습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일부 검사의 경우, 최신 사회문제인 가상화폐의 종류, 거래소의 설립 등 사건의 쟁점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또한,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말소리를 크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목소리가 작지만,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공개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검사는 인상관리를 위한 제스처도 필요해 보였다.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길어지거나 반복 진술이 이어질 때 지루해하는 모습은 전문가답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공판검사가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지 ‘증인’인지 호칭에 대한 실수를 반복할 경우, 신뢰가 떨어졌다.

다른 사람이 발언하는 동안 모니터를 응시한다던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그들의 발언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턱을 괴고 앉아 있거나 뼈뚫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는 지루해하는 모습으로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변호사가 심문을 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는 태도는 검사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2. 신속한 공판 수행

공판검사들은 미리 준비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공판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PPT로 자료를 정리하여 보여줄 경우, “사건의 요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 이해하기 쉬운 부제목을 사용하였다. 공판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증인신문시, 자료와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PPT 자료는 읽기 힘들다는 재판장의 발언이 있자, 즉시 증거를 실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많은 서류를 정확히 구분하여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질문하여 배심원의 이해를 도왔다. 불필요한 질문없이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였고 반복되는 내용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진술을 요약·정리하여 발언하는 모습은 재판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면 이외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검사들도 있었다. 공판을 성실하게 준비하였으나 논점이 아닌 내용을 길게 설명하여 배심원의 피로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증인은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용어를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질문과 설명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는 재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시간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빠르게 발언하거나 급하게 자료를 읽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였다. 검사 측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검사의 신문은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검사 측은

아예 질문을 못하여 재판장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변호인의 신문과정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재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증거자료 제출 시 자료의 양이 방대할 경우, 시간이 지체되는 되었는데 다른 검사의 경우는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시간을 절약한 경우와 대조되었다.

3. 친절한 공판 수행

대부분의 검사들은 증인신문 시, 증인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하나하나 설명하거나 예시를 들어가며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노력하였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다시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어려운 용어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배심원의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면, 미필적 인식이나 폭행의 정확한 의미를 쉽게 설명하였고 유죄입증의 개념을 위해 “수사는 퍼즐 맞추기”라는 비유를 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였다. 처음 검사의 발언 기회가 있을 때 공손히 인사하며 재판을 시작하였고 증인 신문 시 “이 사건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냐”고 질문함으로써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었다. 또박또박 천천히 발언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였다. 또한 발언할 때 배심원들과 눈을 맞추거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와 반대되는 행동이 공판검사로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검사는 피고나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다. 예를 들어, “어떤 취지로 쓰신 건가요?”, “저 낱자들은 뭘 기반으로 특정하신 건가요?” 등의 용어는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질문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일부 검사는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질문으로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하였는데, 증인이나 피고인의 대답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질문에 집중하기 때문으로 보였다. 친절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자신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만 질문한다던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는 상대를 무시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간혹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예시가 적절치 못하여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4. 기타 사항

법원은 공판정에서 소극적인 방청자의 입장으로 물러나게 되어 소송 진행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그런 통제의 주체인 재판장의 태도는 공판정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은 공판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하였다.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였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협조할 것도 부탁하였다. 재판장은 배심원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재판장이 재판 중간에 사건의 쟁점과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다툼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배심원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배심원이 직접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어 배심원의 이해를 돕고자 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장이 조는 모습은 법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인상을 주었다. 재판장의 발언이 법정에서 갖는 무게를 감안할 때 증거없이 본인의 느낌을 쉽게 발언하는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었다. 재판장이 답답하면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아니” “잠시만” “뭐 했다고”와 같은 반말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신문이 길어지자 지루해하며 아예 무관심한 듯 다른 일에 집중하는 듯한 경우도 있었다.

변호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 보였다. 피고인의 감정이 격해져서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 변호인은 중재하지 않았고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여도 그대로 두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변호인이 검사 측 증인을 신문할 때, “그런 적이 있냐고요”, “그건 됐고요,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라고 발언하며 증인을 무시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소송관계자인 변호인도 증거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검토하던 서류를 그대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변호인의 말투는 친절하였지만 검사측 증인 신문 시에 비웃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변호인이 증인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V. 지역별, 재판형식별 공판검사의 태도

1. 지역별 특성과 차이

이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공판 일정이 집중되어 있어서 조사지역이 한정된 면이 있다. 서울·경기 지역의 사례가 10건 중 7건이고 전라·제주 지역이 각각 2건, 경남도 창원에 한정하여 이 조사만으로 공판검사의 태도를 지역별 특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성격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고령의 증인을 신문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공판검사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둘째, 증인의 사투리를 풀어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투리의 경우, 법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공판검사의 태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판검사 개인의 경력과 연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방언의 사용 여부와 성격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더욱 커 보였다. 성격이 급한 검사는 다른 주체에 대해 고려하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판검사가 방언을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성격이 급한 경우도 공판검사의 역할을 인지하고 다른 주체에 대해 배려하는 훈련이 필요해 보였다.

<표 7> 조사지역에 따른 공판검사 태도

조사지역	서울경기	경남, 전남, 제주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따른 차이보다 검사 개인의 방언사용 여부가 더 영향을 미침 지역 방언이 반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인이 고령일 경우, 신문과정의 어려움 증인이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풀어서 질문하거나 정리하는 과정 필요 말이 빨라서 이해하기 어려움
비언어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차이 없음 	
문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차이 없음 	

2. 재판형식별 특성과 차이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공판검사가 변호인과 증인, 피고인을 고압적으로 대하거나 발언을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적었다. 두 재판은 배심원의 존재 유무의 차이로 용어 사용과 사건에 대한 설명, 공판수행 과정의 차이가 컸다. 국민 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는 배심원을 배려하여 좀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었다. 다만, 일반재

판에 비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논점이 아닌 부분까지 설명하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먼저 일반재판의 경우, 공판검사는 피고인, 변호인 측과 사건의 쟁점을 다루는 것이므로 국민 참여재판에 비해 검사 개인의 성향이 더 명확히 드러났다.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여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판검사가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급하게 재판을 진행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대답에는 집중하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판검사는 피고인, 변호인, 증인 측 신문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일은 많지 않았고 신임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주체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공판검사는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그 간의 재판과정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재판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다시 정리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가졌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메뉴얼에 따라 공판검사들은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PPT나 근거자료도 이해를 돕기 쉽게 제시하였다. 공판검사의 태도는 연륜과 경력,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법정에 2명의 공판검사가 참여할 경우, 경륜있는 검사는 증인을 배려하여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의 질문을 하였으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논쟁이 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배심원의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신임검사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증인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질문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재판장의 태도였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과 참관인을 의식해서 더욱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배심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반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즐거나 재판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말을 하거나 짜증 섞인 언어 사용도 일반재판의 경우에 더 두드러졌다.

VI. 맺으며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증거수집과 심리를 거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이 공판검사의 ‘태도’에 주목한 것은 역사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제도 변화에 따라 정착, 구현되고 있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비록 ‘법정’ 모니터링을 통한 ‘인상’분석의 단편적인 관찰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제3자에 의한 언어와 비언어적 행위의 해석은 공판검사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질문하기 위함이다.

이 글은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인권 친화적인 태도와 공판검사의 공소 수행역량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두 가지 관점은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인권 친화적인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소송관계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존댓말의 사용,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호명과 질문방식, 유도 질문과 증인에게 심리적 억압을 가하는가의 여부 등 언어적 행위에 주목하였다. 또한, 변호인과 증인의 발언에 집중하는가, 짜증스런 말투와 응시, 감정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행위도 포함하였다. 법정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장이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치중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는 부분에서 증인과 피고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테면, 사건을 설명하거나 어려운 법정용어를 설명할 때도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과 통명스럽게 말하는 것, 짜증난 목소리로 소리를 높이는 것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같은 언어라도 발언의 양상에 따라 언어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공판검사의 공소수행 역량은 증거조사에 따라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판수행의 성실성, 신속성, 친절함으로 나뉘어서 평가하였다. 성실성은 재판에 얼마나 집중하며 판단의 근거가 되는 판례와 증거자료를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신속성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를 평가한 것이다. 특히 국민참여 재판의 경우는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쟁이 되는 부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재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공판 진행의 신속성으로 평가하였다. 공판수행의 친절함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증인, 배심원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그들의 이해를 도왔는가를 평가한 것이다.

법정은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그 사건을 둘러싸고 피고인, 증인, 변호인과 검사가 죄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소송관계인의 모든 것이 날날이 드러난다. 고프만의 인상관리이론에서 말한 ‘전면’과 ‘후면’은 의도하지 않게 폭로된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증거조사에 입각하여 시민의 감시 상황에서 판결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그 작은 사회에서 권력의 배치가 균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록 몇 개의 사례조사이지만, 이 글에서 확인하고자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매우 자명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0.5.21, 논문심사일: 2020.6.9, 게재확정일: 2020.6.23)

참고문헌

- 강태경 외. 2019.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 행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찰. 2015. 『공판검사의 법정언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메가넥서스 주식회사.
- 김광기. 2011. “위선이 위악보다 나은 사회학적 이유: 고프만, 버거, 가핑켈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 김용세. 2008.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에 기초한 분석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75.
- 김유근 외. 2019.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I):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한변호사협회. 2016. 『검사평가 사례집』.
- _____. 2017. 『검사평가 사례집』.
- 서보학. 2003.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인권보장 및 방어권 강화 방안” 『형사법 연구』 제20호.
- 신의기 외. 2017.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주원. 2020.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보호: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중심으로” 『법조』. 법조협회.
- 이완규. 2007.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의 이해” 『법학논총』 17.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재협. 2011. “법정언어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문화적·상호교섭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52-2.
- 이호중. 2009. “검사의 증거개시의무와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규제방안” 『형사법연구』 21-2.
- 정웅석. 2012.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증거능력의 개념 및 증거판단의 우선순

- 위”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 조 국. 2002.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刑事政策』 제14권 제2호.
- 최종렬·김성경·김귀옥·김은정 엮음. 2018. 『문화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휴머니스트
- Coffey, A. 1999. “The Ethnographic self: Fieldwork and the Representation of Identity” London: Sage.
- Goffman, Erving.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Y.: Doubleday Anchor Books.
- Mason, Jennifer. 2010.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옮김. 경기: 나남.
- Creswell, John W. 2006.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옮김. 서울: 학지사.
-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Nussbaum, Martha C. 2015. 『역량의 창조』 한상연 옮김. 경기: 돌베개.

<Abstract>

Human Rights-Friendly Attitudes of Prosecutors in Trial Proceedings
: Focusing on impression analysis through court monitoring

Lee, Jeong-Eun*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explain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he language and behaviors of prosecutors through court monitoring. To this end, we analyze the attitudes of prosecutors by visiting the courts in Seoul, Gyeonggi, Gyeongnam, Jeonnam, and Jeju Island in person. This research uses the observation method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applies Erving Goffman's theory of impression management to the analysis. The third-party interpretation of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raises a question about what the essential roles of the prosecutor are. The attitudes of prosecutors are categorized into two ways: human rights-friendly attitude and trial performance cap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prosecutors have to understand each case in the broader social relations and contexts and put intentional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nvolved individuals.

Key words: public prosecutor, impression management, human rights, trial proceeding, court monitoring

*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